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상규정

제정 2019. 12.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및 대학 원생(학부학생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재직중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입은 종사자(이하 피해 종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신체 상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본교는 피해 종사자가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규정에 준하여 신체 상 피해를 보상한다

제5조(재산 상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피해 발생 당시의 목적물 감정평가 가액에 의하여 재산 상 피해를 보상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본교는 종사자가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에서 그 보상금 및 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본교는 본교 및 본교 이외의 기관이 지급한 보상금 및 배상금이 종사자의 손해에 미치지 않을 경우, 종사자의 손해와 종사자가 지급받은 보상금 및 배상금의 차이를 한도로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방사능 피폭이 제3자의 귀책을 원인으로 할 경우, 본교는 피해 종사자에 지급한 보상금 및 배상금을 한도로 제3자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 종사자는 본교의 구상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해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본교와 피해 종사자 사이에 보상에 관한 분쟁발생 시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쟁중재를 위하여관련 문서의 제출 · 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제10조(보고) 본교는 종사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 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